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6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2255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8. 14.

판 결 선 고 2020. 9. 25.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19. 9. 16. 한 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28,999,790원의 부과처분 중 27,452,5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토지분) 3,799,810원의 부과처분 중 3,490,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19. 9. 17. 한 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124,032,600원의 부과처분 중 104,92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토지분) 18,312,970원의 부과처분 중 14,490,5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6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구 B 외 38필지 면적 합계 57,247.55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redacted]구 C 외 20필지 면적 합계 15,395.1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은 2019.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교육 및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 제7항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년 귀속 재산세 28,999,790원, 지방교육세 3,799,8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은 2019.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에 따른 경감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별도합산과세표준액을 23,191,223,832원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재산세 124,032,600원, 지방교육세 18,312,9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6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목]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6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되, 다만 그 단서에서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에 따라 재산세의 50/100이 경감되는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소정의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재산세가 경감되는 50/100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분리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6

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비록 구 지방세법이 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 및 제2호 단서가 삭제되었고, 개정이유에서 '현행 규정상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대상 구분 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것인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세율적용에 관한 조항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와 같이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 50/100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 50/1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재산세(토지분) 27,452,530원, 지방교육세(토지분) 3,490,3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제2처분 중 재산세(토지분) 104,920,490원, 지방교육세(토지분) 14,490,55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6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6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6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06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 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 원 초과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000분의 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 원 초과	28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끝.